공 고

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-85호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,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0. 23.

서울전파관리소장

전파법령 위반(전파사용료 체납)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

1. 근 거 법 령 :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
2. 처 분 사 유 : 전파사용료 체납
3. 처 분 결 과 : 무선국 허가취소
4. 처 분 일 자 : 2025. 9. 30.(화)
5. 처 분 대 상 :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
6. 유 의 사 항

가. 허가취소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,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[민원신청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.emsit.go.kr]

나.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,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라.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(☏ 02-2680-1762)하시기 바랍니다.

<무선국 행정처분 내역>

번호	시설자명	허가번호	호출명칭	주소	처분결과
1	라○금	42-2021-10-0000016	121만수3호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	허가취소
2	라○금	49-2022-10-0000263	재난해상121만수3호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	허가취소